

대한장애인육상연맹 선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록 안내

■ 선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록 제출서류

- 가. 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.
- 나. 이력서 1부.
- 다. 개인정보동의서 1부.
- 라. 결격사유 확인서 1부.

■ 선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요건

선수위원회 운영규정

제5조(구성)

- ② 위원은 정기등록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본 연맹에 등록된 선수이어야 하며, 위원 선임 년도 기준 2년 연속 선수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한다.<개정 20.10.07>

■ 선수위원회 위원장 결격사유

선수위원회위원장 선거관리지침

제7조(위원장 후보자의 결격사유)

-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선수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.
 1.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
 2.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
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5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
 -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 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 - 다.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 6. 국회의원
- ② 위원장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연맹 규약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한다.

대한장애인육상연맹 규약 *2항까지는 선수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지침 제 7조 1항과 동일*

제26조(임원의 결격사유)

- ③ 회장의 친족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장애인육상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- ④ 장애인육상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·직원은 가맹단체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장애인육상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육상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장애인육상연맹과 위법·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장애인육상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·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 <개정 '16.11.22>
- 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<개정 '16.11.22>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·도 가맹단체,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·도 가맹단체,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. <개정 '16.6.8>